

15. '93建設工事都給金額の下限決定

資料提供：建設部

1. 목적

- 대형건설업체에 대하여 소규모건설공사 수주를 제한함으로써 중소건설 업체를 보호·육성하고자 함(건설업법 제17조제4항, 동법시행령제25조)

2. 기본방침

- '92신규면허실시로 대폭 증가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확대를 통한 중소건설업체 보호·육성
- '92공사비 지수상승율·도급한도액 신장율·공사실적증가율을 감안하여 계층별 적용대상업체와 하한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

3. 적용범위

- 대 상 자 : 일반건설업자(토목, 건축, 토목건축공사업)
 - 대상공사 : 국가·지자체·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
- ※ 제외되는공사 : 장기계속공사, 수의계약공사, 특수공사와 일반공사가 복합된 공사

4. 시행기간

'93. 7 부터 '94 도급금액의 하한결정시 까지

5. 도급금액의 하한 결정

가.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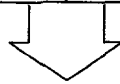
계층	적용대상업체의 도급한도액	도급금액의 하 한	업체수		비고	
			'93	누계	'92	누계
1	1조원이상	23억미만	5	5	1	1
2	5,000억원이상-1조원미만	20억미만	7	12	7	8
3	3,000억원이상-5,000억원미만	17억미만	12	24	6	14
4	2,000억원이상-3,000억원미만	14억미만	13	37	10	24
5	1,500억원이상-2,000억원미만	11억미만	12	49	11	35
6	1,000억원이상-1,500억원미만	8억미만	28	77	21	56
7	700억원이상-1,000억원미만	6억미만	19	96	22	78
8	500억원이상- 700억원미만	4억미만	18	114	9	87
9	400억원이상- 500억원미만	3억미만	20	134	20	107
10	300억원이상- 400억원미만	2억미만	38	172	32	139

나. 하한액대상 도급한도액의 조정사유 및 효과

1) 조정내용

○ 현행('92)

계층	도급한도액		도급하한액		업체수
	최 저	최 고	최 저	최 고	
7	250억원이상	4,200억이상	2억 미만공사	18억미만공사	165



○ 조정('93)

10	300억원이상	1조원이상	2억 미만공사	23억미만공사	172
----	---------	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

2) 사유

○ '92신규 중소기업의 수주영역 확대

- 하한적용대상업체 확대 165→172(7개사)

- 국내 건설공사 물량 증가
 - '91 : 40조 4,140억, -'92 : 51조 1,640억(26.6% 증가)
- 공사비(자재+노임)상승
 - 지수 '91 : 100, '92 : 109(9% 상승)
 - ※ '91건설단가 100원이 '92년에 109원임
- 중규모업체 하한적용율을 하향조정하여 불만해소(135개사)
 - '92 : 도급한도액의 0.7~0.9%
 - '93 : 도급한도액의 0.6~0.7%(0.1~0.2% 완화)

3) 효과

- 중소건설업체에 소규모공사 수주기회확대
 - 대상업체 : 831(순위 173-1003위)
 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금 | 액 : 약 5,032억 |
| 업체당평균 | : 약 6억 |
 - ※ 하한적용대상 172개사는 업체당 29억원 수주감소
- 건전한 수주질서 확립 및 경영내실화
 -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확대로 경영내실화
 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소규모공사 경쟁지양
- 대한건설협회 의견 부분적으로 반영